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일반부·18세이하부) 운영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대회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일반부·18세이하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대회는 야구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 공부하는 학생선수 양성, 건전한 학교 스포츠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최/주관) 본 대회는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한다.

제4조 (규정의 승인) 본 대회 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 및 지침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 제2장 참가 자격

제1조 (팀 참가 자격) ① 본 대회 참가하는 팀은 「경기인 등록규정」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며, 대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중 참가요령에 따라 각 시·도협회 선발팀이 출전한다.

제2조 (선수 참가 자격) ① 대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중 각 종별 참가자격에 따라 본 대회에 참가한다.

② 본 대회에 참가하는 팀의 선수는 경기인 등록규정에 따라 선수로서 활동을 희망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이 완료된 선수에 한한다.

제3조 (참가 신청 기간) 참가팀은 대한체육회에서 지정한 참가 신청 기간 중에 참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제4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및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3장 팀(선수, 지도자 및 임원)의 참가 신청 및 제한

제1조 (참가자격 및 인원) ① 대회 참가자격은 대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에 따른다.

② 본 대회 참가인원은 일반부는 감독, 코치 외 선수 18명 이내, 18세이하부는 감독, 코치 외 선수 20명 이내로 한다.

제2조 (무자격 선수 확인 및 조치) 경기 중 무자격 선수의 경기출전이 발각 되었을 경우 해당 팀은 몰수게임 처리된다. 단, 경기종료 후 이의제기는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무자격 선수 경기출전이 확인되어 몰수되었을 경우, 해당 시·도는 차기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제3조 (대회 관련 증명서의 발급) 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도자, 선수의 대회 참가 기록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인터넷 발급으로 제공한다.

② 각 증명서 중 대회 참가와 관련한 증명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개인 경기실적증명서(선수) : 선수의 대회 참가 및 출전 경기의 각종 스탯 등(야수/투수)

* 선수는 해당 대회의 경기에 출전해야 발급한다.

- 2. 지도자 실적증명서 : 지도자의 지도팀의 상위(3위 이상) 입상 실적 등
- 3. 팀 실적 증명서 : 참가팀의 상위(3위 이상) 입상 실적으로 팀 공문을 통해 발급하며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지도자 및 팀 실적 증명서와 인 경기실적증명서(선수)의 발급 시기는 회 종료 이후로 한다.

■ 제4장 대회 방식 및 경기 일정

제1조 (대회 진행) ① 본 대회는 승자승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② 경기 일정 및 대진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baseball.com/>)에 게재된 내용을 최종으로 한다.

제2조 (대회 일정의 변경) ① 경기 일정 취소에 대한 결정권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있다.

② 해당 지역의 아래와 같은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시 일정 연기를 경기 담당관이 검토할 수 있다.

등급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시간당 평균농도 75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 30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시간당 평균농도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③ 대회 기간 중 정식 경기 이외에 경기장 사정으로 인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경기 개시 및 득점 여부와 관련 없이 추첨으로 승부를 결정한다.(추첨은 선발타순에 따라 각 팀의 9명씩 총 18명이 실시한다.)

④ 결승전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기후, 경기장 사정 등) 공동우승으로 한다.

■ 제5장 경기 규정

제1조 (규칙) 본 대회는 공식야구규칙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경기 성립) ① 정식 경기는 5회로 한다.(강우콜드 및 기타) 5회 이전 경기 및 승부를 가리지 못한 경기(5회 이후 종료되지 않은 회의 동점 또는 역전)는 「제4장 대회 방식 및 경기 일정 제2조(대회 일정의 변경) ③항」에 따른다. 단, 결승전 경기는 정규이닝까지 진행한다.

② 조명시설이 없는 구장은 일몰시간 15분 전에 다음 이닝에 들어갈 수 없으며, 다음 이닝에 들어간 경기는 일몰시간까지 경기를 종료하도록 한다. 일몰시간 기준 2시간 30분(150분) 이전에 시작된 경기는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③ 당일 최종 경기는 회수에 관계없이 23시까지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22시 45분 이후에는 다음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단, 다음 이닝에 들어간 경기는 해당 이닝으로 종료한다.

④ 정규 이닝(9회)로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 연장 이닝(10회)부터 승부차기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대회 경기 규정)

① 대회 콜드 게임 선언은 5·6회 10점, 7·8회 7점으로 하고 준결승전(4강)까지 적용한다.

② 감독이 주심에게 고의 4구를 통보하는 경우, 타자는 1루로 출루한다.

③ 각 팀은 심판의 재정이 규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합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 총 2회의 4심 합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규이닝 이후(10회부터)에는 잔여회수가 그대로 유지된다. 4심 합의 후의 판정은 번복되지 않으며, 판정의 불복이나 어필을 계속할 경우 바로 퇴장 조치한다.

④ 협회의 유소년 선수 보호 및 부상 방지 제도에 따라 18세이하부 경기는 투구 수 제한 지침을 따른다.

1. 투수의 1일 최대 투구 수는 105개로 하며 공식기록원의 집계를 기준으로 한다.
2. 투구 수에 따른 의무 휴식일을 갖는다.

투구 수	휴식일
1 ~ 45구	없음
46 ~ 60구	1일
61 ~ 75구	2일
76 ~ 90구	3일
91구 이상 최대 105구	4일

[투구 수에 따른 휴식일 예시]

	1	2	3	4	5	6
투수1	25구	42구	휴식	투구가능		
투수2	62구	휴식	휴식	투구가능		
투수3	105구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투구가능

3. 최대 투구 수 105개를 투구한 투수는 볼카운트에 관계없이 곧바로 교체하여야 하며, 뒤늦게 확인될 경우 발견 즉시 교체한다.
 4. 같은 날, 던진 투구 수는 합산하여 의무 휴식일을 갖으며 2일 연속 투구로 간주한다.
 5. 투수의 3일 연속 투구를 금지한다.
 6. 노히트노런, 퍼펙트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투수가 투구수 제한에 적용될 경우, 계속 투구할 수 있으며, 기록이 중단됨과 동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 ⑤ 베이스는 설치된 각 구장 규격에 따른다.

■ 제6장 경기 진행규정

제1조 (선수 및 지도자의 출전) 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 대상 선수는 참가신청서와 출전선수 명단에 명시된 선수에 한한다.

②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개시 60분 전에 출전선수 명단 총 3부를 작성하여 기록실(협회 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발출전선수와 교체선수가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공식기록원과 참가신청서와 출전선수 명단을 대조 및 확인하여야 한다. 출전선수 명단을 제출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단, 심판의 판단하여 명백한 부상을 인정하는 경우 출전선수 명단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 선수는 당일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③ 경기 중 선수 교체 및 어필은 오직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공식야구규칙에 명시된 어필 사항 이외의 어필을 하는 감독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제2조 (경기 담당관의 역할) ① 경기 담당관은 해당 경기를 주관,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경기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② 경기 담당관은 경기 개시 전 경기장 등을 점검하며, 우천 또는 강우예보가 있는 경우 방수포 설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내린다.

③ 경기 담당관은 경기 전 경기장 내 응급후송차량 배치 여부와 의료진(응급초지 가능 전문가 또는 간호사) 배치와 자격 사항을 확인한다.

④ 경기 담당관은 경기 종료 후 경기 담당관 보고서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제출한다.

⑤ 경기 담당관은 혹서기 경기 중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경기 중 지속적으로 선수의 얼굴빛, 보행, 행동 이상 유무 등을 관찰하며, 열사병 징후(어지러움, 두

- 통, 혼란, 의식저하 등) 발견 시 즉시 해당 선수 확인 조치 후 감독 및 의료진에 통보한다.
2. 폭염 경보 또는 WBGT 30 이상 시 이닝 종료 후 또는 필요한 시점에 쿨링타임(최소 5분)을 시행하며, 수분 섭취 및 체온 조절을 유도한다.
 3. 선수에게 이상 징후 발생 시 경기를 즉시 중단하고, 현장 의료진 또는 119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조치한다.
 4. 경기 중 이상 징후 발생, 쿨링타임 시행, 경기중단 등 모든 혹서기 관련 조치는 경기일지에 기재하고, 경기 종료 후 협회에 보고한다.

제3조 (경기준비 및 워밍업) ① 경기에 출전하는 팀은 선수들이 심장, 호흡기관 등 신체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 후 선수를 출전시켜야 하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해당 팀에 있다.

② 당일 첫 경기 대진팀 중 홈팀은 경기시작 전(각 경기장 사정에 따름)부터 30분 간 필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습이 종료되면, 10분 내로 필드를 정리하고 덕아웃 내에 위치하며, 원정팀은 이후부터 30분 간 필드를 사용할 수 있다. 연습시간 배분은 경기 담당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앞 경기가 종료된 후 경기 시작까지 남은 시간이 20분 미만일 경우, 양 팀은 필드 연습을 생략하고 워밍업 후 바로 경기에 들어간다. 경기 시작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여 주심은 내·외야를 반으로 나눠 필드 연습의 시행을 결정할 수 있으며, 구장 정리 시에는 외야에서의 연습만 허용한다.

제4조 (도핑방지 의무) ① 도핑방지규정은 선수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경기운영을 위함이며, 협회에 등록된 선수 및 지도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협회 등록 소속 선수 및 지도자(감독, 코치, 부장, 선수관리담당자 등)은 항상 도핑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검사 절차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여할 수 없다.

제5조 (경기의 진행) ① 경기 시작 전 양 팀 선수단 도열하여 심판의 홈플레이트 미팅 후 경기를 시작한다.

② 선수단은 덕아웃, 필드 등 경기장 내에서 침을 뱉거나 배팅장갑, 배트, 공에 침(타액)을 포함한 이물질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공수교대 시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전 선수는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며, 공격과 수비의 플레이볼은 60초 이내에 해야 한다.

④ 경기 중에 지도자의 타임요청은 공격과 수비 모두 포함하여 총 3회로 하며, 정규이닝(10회) 이후부터 3이닝 당 1회를 추가한다. 단, 이 때 정규이닝의 '타임요청' 횟수는 연장이닝 '타임요청'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포수가 마운드에 올라가는 횟수는 경기당 총 2회로 하며, 정규이닝 이후(10회)부터 3이닝 당 1회를 추가한다. 허용횟수 이후 포수의 마운드 방문은 팀의 타임요청 1회로 산정하며 ④항을 적용한다.

1. 포수가 타임 요청 후 마운드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마운드에 방문할 경우 지도자 타임요청과 포수 타임을 각각 적용한다.

2. 덕아웃에서 감독이 포수를 불러 작전을 지시한 경우는 포수 타임으로 적용한다.

3. 공식야구규칙에 따라 지도자가 포수 또는 야수에게 지시한 이후 포수가 타임을 요청하여 마운드를 방문한 경우 지도자 타임요청으로 적용한다.

제6조 (경기 스피드업) ① 지도자 및 포수의 마운드 방문 제한시간은 30초로 하며, 지도자의 마운드 방문의 경우 타임을 요청한 시점부터 1,3루 파울라인을 넘는 시점까지 2루심이 30초의 시간을 재며, 방문 제한 시간을 지연시킬 경우 심판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단순퇴장 조치한다.

② 감독이나 코치가 타임을 요청하였을 때는 1명의 내야수만이 투수 마운드에 갈 수 있다.

③ 감독, 코치, 선수가 경기 중 공식기록원의 판정에 대한 어필로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심판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바로 퇴장 조치한다.

- ④ 경기 진행 중 경기흐름을 방해하는 지도자의 경기지도 행위가 있을 경우 심판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바로 단순퇴장 조치한다.
- ⑤ 타자는 타격 중 불필요한 행위로 타석을 벗어날 수 없으며, 타임을 요청한 타자는 주심의 승낙이 있을 때에만 타석을 떠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경고 조치한다.
- ⑥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야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타임을 요구할 때 심판은 불응할 수 있다.
- ⑦ 경기 중단 시에 베이스코치가 코치박스를 벗어났을 경우 경기 재개 시 속보로 코치박스로 복귀한다.
- ⑧ 대기타석에는 다음 타순의 선수만 준비할 수 있으며 이외의 선수는 덕아웃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위반 시에 심판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 ⑨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12초 이내에 투구하지 않을 경우 주심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볼로 판정한다.
- ⑩ 투수가 견제구를 포물선으로 던지는 경우, 첫 번째 경고, 두 번째부터 보크로 판정한다.
- ⑪ 전 회에 이어 등판한 투수의 준비투구는 2구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4구로 한다.

제7조 (경기 중 금지행위) ①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팀의 감독·코치·선수는 타자가 홈플레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타자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단, 베이스 코치의 격려 행위는 예외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심판은 첫 번째는 해당 팀에 경고, 두 번째부터는 위반자를 바로 단순 퇴장 조치하며, 이때 홈런 및 득점은 인정된다.

- ②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야수가 주자에게 빈 글러브로 태그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심판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 ③ 포수는 자신이 공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와 포수에게 경고를 선언한다.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 ④ 덕아웃에는 본 대회에 참가신청된 임원(감독, 부장, 코치, 트레이너)과 선수(일반부 18명, 18세이하부 20명)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첫 번째는 경고하고 이외 인원을 퇴장 조치하며, 두 번째 적발 시 감독을 퇴장 조치한다.
- ⑤ 경기 중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장 내·외에서의 지도자의 흡연행위는 금지되며 발견즉시 퇴장 조치한다.

- 제8조 (유니폼 및 장비)** ① 경기에 출전하는 지도자 및 선수는 경기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한다.
-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게 위험한 장비(보석류 포함)를 착용하지 않는다
 - ③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리그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유니폼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 심판, 공식기록원, 상대 팀에 해당 사실을 알린다.
 - ④ 덕아웃, 벤치 밖에는 일체의 용구를 놓아두지 못한다.
 - ⑤ 선수는 반드시 양귀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베이스코치도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 제7장 징계 및 포상

제1조 (징계 적용) ① 대회 몰수게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경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②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임원 및 지도자(감독, 코치, 부장, 선수관리담당자)는 경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관중석에서 사인을 주고받는 행위 등)를 할 수 없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대회 중 야구장 공공시설물 훼손과 관련하여 해당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한다.
- ④ 경기 담당관은 경기 진행과 관련하여 불성실한 경기 운영으로 팀 승패 및 개인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라고 판단될 경우, 즉각 개입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고 계속된 행위 발생 시 관련자(지도자, 선수)는 심판의 지시로 즉각 퇴장 조치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해당자를 징계한다.

제2조 (대회 중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① 동 대회에 참가한 지도자 및 학생선수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반행위 별 징계 기준」과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한다.

② 위반 행위 및 제재 기준은 아래와 같다.

위반 행위	제재(출전정지)
논쟁의 지연(5분 이상)	퇴장/스포츠공정위원회 회부
심판에게 불필요한 발언, 행동, 접촉, 욕설	
폭력적으로 장비를 던지는 행위(헬멧, 배트 포함)	
심판/선수 대립	
벤치 클리어링	
폭행	
팬, 학부모, 경기 임원(감독관 등)과의 용인할 수 없는 대립	
시설 및 기물 파괴	
경기 중 덕아웃과 스탠드 간 커뮤니케이션	(감독) 1~2경기
타자에게 몸에 맞는 볼을 고의로 던지는 행위	퇴장 / 1~3경기
덕아웃에서 경기장 안으로 장비를 던지는 행위	퇴장 / 1~3경기
마운드 차징(타자가 투수 방향으로 이동해 투수와 대립)	퇴장 / 1~2경기
타자의 머리 부분에 고의로 볼을 던지는 행위	퇴장 / 1~3경기
불법 배트 및 외부 물질/변질된 볼을 사용하는 행위	퇴장 / 1~3경기
퇴장 조치 후 덕아웃에 머무는 행위	1~2경기
플레이 종료 전 덕아웃 밖으로 나와 경기를 방해하는 행위	퇴장 / 1~3경기
지나친 응원(상대 투수의 투구를 방해하는 말 또는 행위, 상대팀 야유, 춤추기, 예의에 벗어난 말 또는 행위, 국기문란 노래 등)	(1차 경고) 퇴장 / 1~3경기
지나친 세리머니(경기 중 및 경기 종료 직후) * 물 뿌리기, 장비, 로진 등을 던지는 행위 등 * 세리머니로 인한 타자/주자의 아웃	(1차 경고) 퇴장 / 1~3경기
경기 전·후 선수단 상호 간 인사 또는 하이파이브 거부	(감독) 퇴장 / 1~2경기
지정 구역 외 흡연	1경기

③ ②항 기준에 따라 위반 행위가 적발 되었을 경우 당 경기에 배정된 심판 전원과 경기 담당관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출전정지 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회부)를 결정한다.

④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위반자 소속, 성명을 포함한 기본 정보와 위반 행위에 대한 ‘전국대회 위반 행위 보고 및 제재 결정서’를 작성하여 협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사무처는 위반자 및 소속 팀에 최종 제재를 통보한다.

⑤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소속 팀 감독을 제재한다.

⑥ 경기 담당관은 경기 진행과 관련하여 불성실한 경기 운영으로 팀 승패 및 개인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라고 판단될 경우, 즉각 개입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고 계속된 행위 발생 시 관련자(지도자, 선수)는 심판의 지시로 즉각 퇴장 조치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해당자를 징계한다.

제3조 (대한체육회 시행 지침) 대회 기간 중 해당 경기단체가 경기운영을 잘못하여 이에 대한 다툼이 있

거나 경기 참가자들이 경기장 질서를 크게 문란시켜 더 이상 경기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경기의 모든 일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해 년도 종목에서 제외한다.